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상대 업종 참가업체(전문건설사업자) 사전 확인사항(미충족 시 배제, p.4 참고)**
 - (종합공사 기준 **기술능력** 충족여부 확인)
2026. 9. 3.(목) 기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종합공사 기준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주시 연원동 처리구역 외 하수도 정비사업

나. 공 사 현 장: 상주시 연원동 468-12번지 일원

다. 공 사 개 요: -오수관로 D150~200mm, L=766m
-배수설비 15가구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추 정 금 액: 금377,340,000원

- 도급예정액: 금263,520,000원 (**추정가격: 239,563,636원** / 부가가치세: 23,956,364원)

- 관급자재대: 금113,820,000원 (관급자관급액: 0원 / 도급자관급액: 113,820,000원)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263,520,000원**입니다.

사. 입찰(견적)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24,544,54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제출 및 개찰 개요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화) 10:00부터 2026. 9. 4.(금) 10:00까지	2026. 9. 4.(금) 11:00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견적)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상, 적격심사미대상, 제한최저낙찰입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
-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종합공사에 전문공사 허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모두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허)

구분		업종별금액(도급액)	평가대상업종 비율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263,520,000원	100%

구분		업종별금액(도급액)	평가대상업종 비율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192,369,600원	7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71,150,400원	27%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시공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착공 전까지 사진대지 및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장비와 인력의 기준 >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업체가 착공 전까지 갖추어야 할 장비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불가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및 무효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상호·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대상입니다.**

1)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같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 전** 까지로 합니다.(낙찰예정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 ⑦ 기타 필요시 요구서류[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자본금 검증 서류 >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 검토가 필요할 경우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금액(원)	3,992,315	3,021,552	1,933,121	397,031	4,878,756	9,837,770	484,000
	24,544,545(A값)						

- 다. 청구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아래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

8.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의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해 대금이 적기지급되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 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 절차에 의거 노무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며 **착공 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대여 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 청렴계약 및 조세포탈 관련 서약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원본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간주 처리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원본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산관련]** 전자입찰 이용 및 전산장애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관련]** 공사 내역서 열람 등: **상주시 하수도사업소(☎054-537-5807)**

다. **[계약관련]** 입찰에 관한 사항 등: **상주시 하수도사업소(☎054-537-5802)**

라. **[비리관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비리행위·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주시 하수도사업소(☎054-537-5802), 공보감사실(☎054-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내역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